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91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와 C이 2019. 4.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이 2019. 4.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9. 4. 8. 접수 제682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9. 4. 8. 접수 제682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다.

나. C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22. 5. 31. 기준 채무액은 원금 24,633,068원, 연체이자 15,464,349원 합계 40,097,417원이다.

다. 주식회사 D은 2022. 6. 27. C에 대한 위 나.항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라. C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4. 2. 형제지간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4. 8.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9. 4. 8. 접수 제6820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9. 4. 8. 접수 제6820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C이 무자력 상태인지 몰랐다. C이 지병이 생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하여 조상들의 묘가 있는 토지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를 매수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C과 형제 지간으로 C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C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모두 피고가 소유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점, 조상들의 묘가 있는 점 등으로 C의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온전히 보전하려고 의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 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별 지 목 록

[토지]

1. 경상북도 상주시 대 481m²
2. 경상북도 상주시 임야 5642m²

